

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정으로
「복지통장제」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통리장 임무에
복지임무를 부여하여 주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예방적
복지실현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통·리장의 복지임무 부여(안 제2조)
 -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보장 사업추진 지원

3. 조례안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

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업무중”을 “업무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보장 사업추진 지원

제3조제4항 중 “1부식”을 “1부씩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범위안”을 각각 “범위 안”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통·리장의 임무) ① 통·리장은 구역안에서의 읍·면·동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.	제2조(통·리장의 임무) ① ----- ----- ----- <u>업무 중</u> ----- -----.
②통·리장은 통·리를 대표하며 다음 <u>각호</u> 의 임무를 수행한다.	②-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 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<u>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</u>
	<u>사회보장 사업추진 지원</u>
4. (생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제3조(복무) ① ~ ③ (생략)	제3조(복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통·리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·인계서를 작성하여 통·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읍·면·동장, 인수자, 인계자가 각 <u>1부</u> 씩 보관한다.	④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부</u> <u>씩</u> -----.
제4조(실비변상) ① 통·리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, 예산의 <u>범위안</u> 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, 월정수당은 읍·면·	제4조(실비변상) ① ----- ----- ----- <u>범위 안</u> ----- -----

동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통·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사기진작 등) 시장은 통·리장이 읍·면·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1. ~ 3. (생략)

-----.

②-----범
위 안-----
---.

제6조(사기진작 등) -----

각 호-----.
1. ~ 3.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

□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·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,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21.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권 순 서
	담 당	박 주 영
	담 당 자	권 순 모 (480-6762)